

# 도서정가제 법안, 또 다시 표류하나

공정거래법과 어긋나 부처간 협의안 논의중



도서정가제 법제화 시도가 또 다시 벽에 부딪혔다. '책값 10% 할인 한도제'와 '벌칙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에 걸려 무기한 서류 상태에 들어간 것. 법사위는 최근 "도서정가제 법제화 및 벌칙 조항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안을 수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공정거래법과 상충돼 난항 거듭

지난해 11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30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올 초 국회 문화관광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할 때만 해도 입법이 거의 확실시 됐던 터라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는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관련 부처간 좀더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법안이 수정되면 재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욕적으로 움직였던 심의원측은 "법안이 완화되는 정도가 실제 도서정가제 발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법안을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부에 넘긴 상태다. 현재 문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놓고 한창 논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가제 법제화를 거의 대세로 받아들였던 출판 및 서점업계는 다시 법제화가 무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가는 등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그 동안 공정위는 도서정가제 붕괴는 책값 상승, 서점붕괴, 출판종수 감소, 저자의 창작 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진다는 출판계의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이번에도 여전한데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볼 때 일종의 담합행위인 도서정가제를, 비록 책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워낙 강도 높게 법제화를 추진하고 또한 중소서점업계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도서정가제가 서점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 헌법 및 공정거래법과 조화될 수 있는지, 타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여지를 보였다.

그 동안 도서정가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서점조합연합회 이창연 회장은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고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가타부타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며 언급을 피했다. 도서정가제 법제화에 반발해온 알라딘, 최근 와우북과 살림을 합친 에스24 등 온라인 서점들은 "도서정가제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서정가제 입법화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도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사 홈페이지에서 벌였던 도서정가제 규탄 네티즌 서명운동이 모습을 감췄고 네티즌들의 항의방문을 유도한 심재권 의원 홈페이지 링크도 벌써 삭제한

점이 이를 말해준다. 온라인 서점업계도 할인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최근 교보문고까지 가세해 온라인에 한해 책값을 할인하기 시작한 터라,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 법제화보다 출판계의 의견 조율 우선돼야

이런 난국에 대해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선임연구원은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한다고 출판시장이 정돈되지는 않는다"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현 출판시장을 토대로 정가제와 할인제의 일장일단을 분석하고, 어떤 것이 출판의 장래에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업계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정가제가 통과될지라도 그것의 적용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부처간 물밑 논의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벌칙금'은 유지시키되, 정가제 적용 도서에서 학습참고서류를 제외하는 방안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다. 즉 벌칙 조항을 신설해 법으로서 위상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도서 범위를 좀더 엄격하게 정해 다른 업종에서 일어날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타협안 또한 중소서점업계를 중심으로 한 출판계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참고서 및 교육교재의 정확한 범주도 없는데다 학습참고서에 창작성이 없다는 판단은 매우 일방적이며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출판시장에서 학습참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5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이 타협안은 더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어쨌든 길은 세가지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느냐, 법안이 적정 선에서 수정되고 법이 통과된 후에 한번 더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느냐, 법제화가 아예 좌절될 경우 현행 도서정가제의 유효가 만료되는 올 연말까지 이대로 가다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강성민기자